

뉴욕주 선거법 (2020년 법률 제55장에 따라 개정됨)

§ 3-110. 근로자 투표 시간 보장. 1. 등록된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날에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투표할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경우, 최대 2시간까지 임금 삭감 없이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투표할 수 있다. 이때 근무 시간 조정과 근무 시간 외 투표 시간을 합할 수 있다.

2. 근로자가 투표 시작 시각과 교대 근무 시작 시각 사이 또는 교대 근무 종료 시각과 투표 마감 시각 사이에 연속으로 4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, 근무 시간 외에 투표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. 근로자가 연속으로 4시간 미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, 근무 시간 외 투표 시간을 합하여 투표 가능한 범위에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 단, 임금 삭감 없이 조정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 교대 근무 시작 또는 종료 시에만 투표하도록 허용하며, 이 시각은 별도의 상호 합의가 없는 한 고용주가 정할 수 있다.

3. 근로자에게 투표를 위해 근무 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, 해당 근로자는 선거일 최소 2일, 최대 10일 전에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위해 근무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한다.

4. 모든 고용주는 각 선거일 최소 10일 전부터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볼 수 있는 직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본 조항의 규정을 명시한 통지문을 게시해야 한다. 해당 통지문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까지 게시해야 한다.

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내 사항

선거일 근로자 투표 시간 보장

뉴욕 선거법 제3-110¹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

- 투표 시작 시각부터 교대 근무 시작 시각까지 또는 교대 근무 종료 시각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4시간 연속으로 투표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등록된 유권자는 투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 삭감 없이 최대 2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교대 근무 시작 시각이나 종료 시각에 투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, 이 시각은 고용주가 정한다. 단, 별도로 상호 합의된 경우는 예외이다.
- 선거일 최소 2일 전, 최대 10일 전까지 고용주에게 투표를 위한 근무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

Revised 6.23.2025

¹ 고용주: 모든 고용주는 각 선거일 최소 10일 전부터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볼 수 있는 직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본 법의 규정을 명시한 통지문을 게시해야 한다. 해당 통지문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까지 게시해야 한다.